

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기본 인적사항	성명		면허번호
	면허발급 연월일		E-mail
	주소		
	연락처	일반전화	휴대전화

취업상황	활동 여부		
	[] 집단급식소 근무 [] 집단급식소 외 근무 [] 미활동		
	집단급식소 근무자	근무 집단급식소 구분	
		[] 산업체 [] 병원 [] 학교 [] 사회복지시설	
		[] 어린이집 [] 유치원 [] 교정시설 [] 군대	
		[] 경찰서	
		근무처명 및 주소(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)	
		집단급식소명	주소
		1.	1.
		2.	2.
	3.	3.	
	4.	4.	
	5.	5.	
집단급식소 외 근무자	근무 기관 구분		
	[]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[] 교육 및 연구기관		
	[] 식품제조 가공업소 [] 위탁급식전문업체(행정업무)		
	[] 보건소 [] 행정직 공무원		
	[]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[] 보육정보센터 [] 기타 ()		
	근무처명		
	주소		
미활동	미활동 사유		
	[] 임신·출산·육아 [] 일시적 폐업·실직 [] 질병·사고 등 [] 해외체류 [] 기타()		

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	최근 신고연도
	보수교육 이수상황
	총 ()시간 이수 의무 중 ()시간 이수

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

첨 부 서 류
1. 보수교육 이수증(이수자만 첨부합니다)
2.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(해당자만 첨부합니다)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)

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

1.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가. 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: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
나.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: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
2.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,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.
3.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"집단급식소 근무자"란만,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"비집단급식소 근무자"란만 작성합니다.
4.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.
5.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6.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7.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.